

## 비자변경 ( 체류자격 변경 )

### □ 연수(D-4)→유학(D-2)

○ D-4에서 D-2로 변경할 경우 출입국 관리소에가서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 및 소속 기관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 아래의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 비자 변경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- 제출서류

- 신청서, 여권, 수수료 7만원, 표준입학허가서
- 체류지 입증서류

예시 : 임대차계약서, 숙소제공 확인서,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, 공공요금 납부영수증, 기숙사비 영수증 등

#### · 가족관계 입증서류

반드시 원본 및 번역본 첨부해야함

아래 21개국에 한하며, 부모의 영문성명\*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할 것

\*한글 번역본에 영문성명을 기재 하거나 여권사본 첨부

<21개 국가>

중국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몽골, 태국, 파키스탄, 스리랑카, 인도, 미얀마, 네팔, 이란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우크라이나, 나이지리아, 가나, 이집트, 페루(총 21개국)

#### · 최종학력 입증서류

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함

아래 21개국 출신 국민 또는 동 국가 소재 대학 등에서 학위(학력)

취득자는 아래 **A**, **B**, **C** 중 택일

<21개 국가>

중국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몽골, 태국, 파키스탄, 스리랑카, 인도, 미얀마, 네팔, 이란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우크라이나, 나이지리아, 가나, 이집트, 페루(총 21개국)

**A** 아포스티유(Apostille)확인을 받은 학위(학력) 등 입증 서류

**B**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

**C**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·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 (중국 내 학력·학위 취득자에 한함)

※ 단, 국내 대학 등에서 학위(학력)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제출 허용

□ 유학(D-2)→구직(D-10)

-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을 한 후 구직을 위하여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인턴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직(D-10)비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.
-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: 6개월
- 제출서류
  - 신청서
  - 수수료
  - 구직활동계획서(구직희망직종 및 기업 등 명칭, 체재경비 조달방법 및 활동 계획 등이 포함)
  -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
  - 학력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
  - 국내대학학사로 학점 3.0미만인 경우 지도교수 또는 총(학)장의 추천서

